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

**2022. 6.**

**주식회사 컬리소프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

## 1. 일반현황 ('21년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대 표 자	김기환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웹하드 사업자(오렌지파일) / 약 2,000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억 2천만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김기환 대표이사

##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15. 1월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발견시 온라인 신고기능을 통해 접수하며, 홈페이지 내 저작권 보호센터 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제목·명칭등에 대해 식별 및 검색이 되지 않도록 설정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주)버킷스튜디오의 Smart Filter 시스템 적용 (DNA 필터링), 방통위 HASH 시스템 연동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팝업 또는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의심 영상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인력의 인식 제고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적발된 이용자에게 대한 공지를 통해 경각심 고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주)컬러소프트

443-4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2-4 만월빌딩 4층

Tel 031-202-5871 Fax 031-206-5877

문서번호 : 220101-01

2022.11.28

수 신 : 내부결재

참 조 :

제 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수립

1. 관련

- 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3735(2021.11.16.,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셀하드,F2P) 대상 설명회 개최 알림)
- 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66(2022.01.11.,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안내)

2. 위 1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6 등


나. 기재사항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내규 및 운영관련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진행 사항 등

(주)컬러소프트 대표이사 김기환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서 >

결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서**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 1. 기본원칙

주식회사 컬러소프트(이하 '회사')는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에 대한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조치를 상시 강구하여야 한다.

## 2. 계획 및 시행

회사는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불법영상물 유형	세부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불법촬영정보 (제14조)</li> <li>-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불법촬영정보</li> <li>- 성적촬영물의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 정보</li> <li>* 성적 허위영상정보 (제14조의 2)</li> <li>-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li> <li>*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제24조)</li> <li>-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진 등</li> </ul>
기타 디지털 성범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불법촬영정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li> <li>- 성폭력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li> </ul>

### 2.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

회사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절차 및 청소년유해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2.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회사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등을 교육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서비스 약관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 2.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기능 마련

2.3.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2.3.2.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 시 누구나 PC, 모바일등 신고버튼을 통해 신속히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2.4. 피해상담과 고충처리 정책 수립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구제 조건의 지연 및 처리 미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등 신고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5. 불법촬영물등 검색, 게재제한 조치 수립

2.5.1.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하며 연관검색어 등의 노출을 금지한다.

2.5.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DNA 필터링) 상시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6.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2.6.1. 홈페이지(PC, 모바일) 메인 화면 및 기타 팝업화면에 불법촬영물등의 경고 배너 및 공지사항을 노출시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노력한다.

2.6.2.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7.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2.7.1.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시켜야 한다.



### 3.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구 분	정	부
성 명	김기환	최근수
부 서	대표이사	고객만족센터
직 책	대표이사	팀장
지정일	2015. 01. 05.	2015. 01. 05.

### 4. 유통방지 교육 및 책임자 준수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1. 회사는 상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등을 교육한다.
- 5.2. 사내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외부기관에서 진행되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 5.3.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모니터링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5.4.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상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관련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 5.5.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처리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
- 5.6. 모니터링 인원의 일일 점검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해당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5. 업무 대응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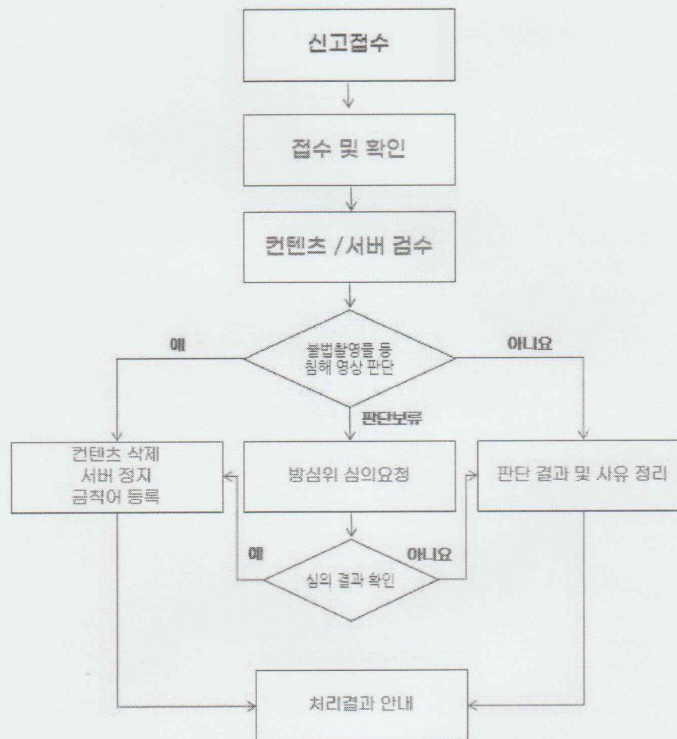
- 5.1.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 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관련 콘텐츠 및 해당 서버의 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 및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5.2. 해당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서버 운영자에게는 경고 문구/접속차단 안내를 보낸다.

5.3.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빠르게 회신한다

5.4. 아래의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신고/삭제처리 프로세스를 참고.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6. 필터링 구축 현황

6.1. ㈜버킷스튜디오의 Smart Filter 시스템 적용 중 (DNA 필터링)

6.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기술 적용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특징정보 획득 및 DB 구축

- 특징정보 추출 및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수신
-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 추출하여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
-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가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존재하는지 비교 요청
-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일치/불일치)를 수신
-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하고 식별결과가 일치하면 게재 제한,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 허용

## 7. 기타 운영사항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이용자 보호 계획서"의 내용을 따른다

##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 신고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시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현황>

PC	Mobile
 <p><a href="http://www.orangefile.co.kr/server_web.org">www.orangefile.co.kr/server_web.org</a></p>	 <p><a href="http://www.orangefile.co.kr/mobile/server_web.org">www.orangefile.co.kr/mobile/server_web.org</a></p>

###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고객센터, 031-202-5871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의심영상물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을 통한 상시 신고 가능

<고객센터 운영 현황>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Declaration List)

서버닉네임  조회

NO	서버닉네임	회원ID	신고유형	신고사유	처리결과 수신처	진행상태	답변상태	등록날짜	처리완료	
8	orangetest	searchtest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 0000 를 신고합니다.	kschoi@colorsoft.co.kr / 010-9999-9999	신고중수	답변준비중	2021-12-09 14:48	0000-00-00 00:00	[상세] [삭제]
4	orangetest	searchtest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테스트 신고합니다.	keunsu77@hotmail.com / 01032558343	신고중수	답변완료	2021-11-19 16:04	2021-12-09 14:47	[상세] [삭제]

1

###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

유해단어  
리스트  
(예시)

금칙어저장/새로고침

불법음란물/촬영물/저작권 금칙어목록

금칙어  조회 등록

[금칙어등록] [금칙어검색]

불법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개인유출)	외부요청(여가부 등)	저작권	기타	계
27	2		2	34098		34129

전체 금칙어목록

NO	유형	금칙어	등록일	등록자	대상	관리
34129	저작권	우린족당	2022-03-18	김기훈	<input checked="" type="radio"/> 공통 <input type="radio"/> 불타 <input type="radio"/> 검색	[수정] [삭제]
34128	저작권	투이스픽인	2022-03-10	김기훈	<input checked="" type="radio"/> 공통 <input type="radio"/> 불타 <input type="radio"/> 검색	[수정] [삭제]
34127	저작권	바니일기	2022-03-07	김기훈	<input checked="" type="radio"/> 공통 <input type="radio"/> 불타 <input type="radio"/> 검색	[수정] [삭제]
34126	저작권	아흔미미	2022-03-07	김기훈	<input checked="" type="radio"/> 공통 <input type="radio"/> 불타 <input type="radio"/> 검색	[수정] [삭제]

검색결과  
제한 화면

PC

검색금지어 검색수행 시 결과 자체를  
노출하지 않음

Mobile

검색금지어 검색수행 시 결과  
자체를 노출하지 않음

####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설정 여부,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포함) 적용 여부 등 기재

구분	PC	Mobile
연관검색어 노출 제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제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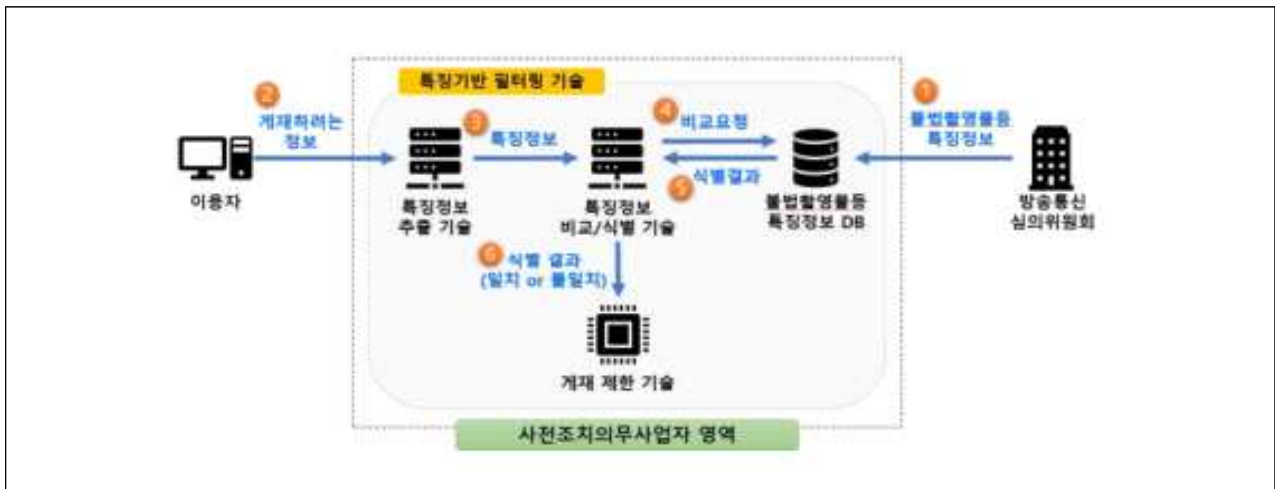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1년 11월부터 기존 불법음란물 필터링 관련 업체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기술 테스트를 완료하여 적용 중에 있음

· (주)버킷스튜디오의 Smart Filter 시스템 적용 (DNA 필터링)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특징정보 획득 및 DB 구축
- ② 특징정보 추출 및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수신
- ③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 추출하여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
- ④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가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존재하는지 비교 요청
- ⑤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일치/불일치)를 수신
- ⑥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하고 식별결과가 일치하면 게재 제한,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 허용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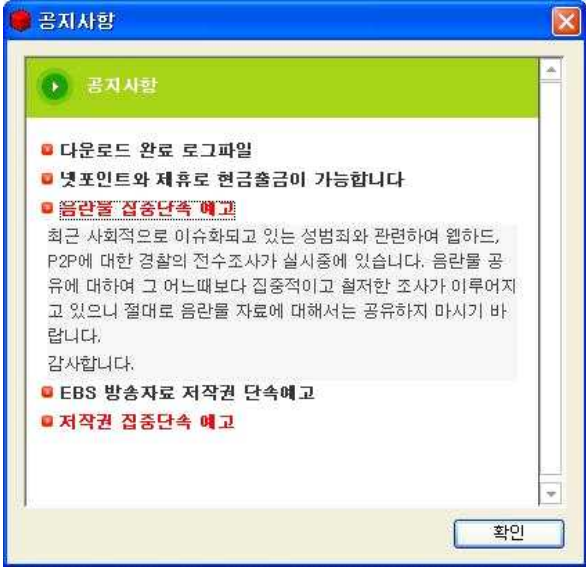


##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불법촬영물 유통적발시 조치 사항 공지

<고객센터 운영 현황>

PC	Mobile
 <p>www.orangefile.co.kr/server/notice.org</p>	<p>해당없음 (P2P 공유기능은 PC버전에서만 가능)</p>

### ○ 로그기록 보관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 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음

<p>&lt;로그종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고·삭제요청 처리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신고일자·유형 처리결과 등</li> <li>② 검색기반 필터링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설정 단어 유형·등록일자·삭제일자·검색제한 필터링 작동여부 등</li> <li>③ 특징기반 필터링 및 게재제한에 포함하여야 할 로그기록 : 파일명, 게시번호, 업로드, 계정/일시/결과 값, 필터링 작동여부, 차단값 등</li> </ol>
---

<로그기록 현황>

저작권/음란물모니터링 현황

< 2022.01 >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2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3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4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5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6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7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8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9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0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1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2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3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4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5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6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7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8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19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20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21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22 저작권 - 음란물 ✓ 기타 -

- 관련 로그는 DB에 저장되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입력, 조회 (필요시 텍스트로 DUMP)
- 다운로드 제한 및 필터링 관련 로그기록은 필터링업체(버킷스튜디오)에서 저장 및 관리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자체 노력 중

-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

<홍보 및 캠페인 현황>

**OUT**  
몰리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아웃!

최근 사이버 상에서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에서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인터넷 이용으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운로드 파일 목록: 0/1    총 필요한 온라인: 1 개

파일이름	파일크기	온라인	상태
633 폭격대 (633 Squadron_1964) 1.Av	717,834KB	1	대기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예외내용 :

온라인파일을 통해 받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이 끝난 경우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

컴퓨터 끄기    창 닫기    폴더 열기     이어 받기    끊어 쓰기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구축 및 모니터링 운영 확대 계획
  - 저작권 보호센터 운영 (온라인, 유선)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시스템(필터링 등) 개발 구축 노력
  - 자체 검색금지어 지정 및 상용업체의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버킷스튜디오)
- 기타 사업자가 마련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등
  - 불법촬영물등을 공유한 사용자에 대하여 MAC 기반 차단기술 적용 (동일한 PC에서는 사용자를 바꾸더라도 재이용 불가)

###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1.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관·단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	-	-	-	-	-	-	-	-	-	-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삭제·차단 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	-	-	-	-	-	-	-	-	-	-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 관련 규정

- 2015년 1월에 제정된 사내 “이용자 보호 계획서”의 제4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접수 및 처리계획”에 따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약관>

**오랜지파일 클린 캠페인**

아래의 기준에 반하는 불법 음란 자료를 공유했을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사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에 관한 심의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 15조 제 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향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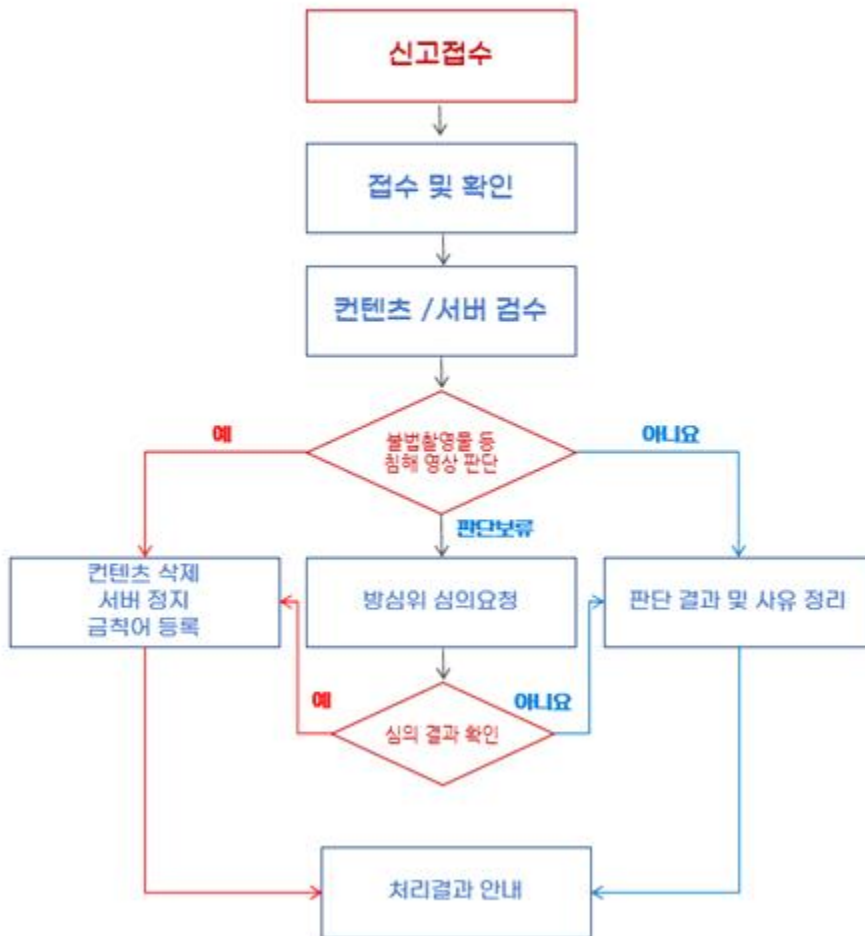
다. 성행위나 기타는 수반된 사유사유로 인한 경우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회사내 신고·삭제 요청시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접수될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해당 불법촬영물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및 주의 안내를 쪽지를 발송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게시물에 대해 특정 단어 및 검색어를 취합하여 검색 차단 조치를 한다.
- ④ 불법촬영물등 게시물에 대해 해시값 제재를 통해 추후 재발을 방지 한다.
- ⑤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처리 내용을 안내한다.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이의제기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되도록 하고, 3년 이상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li> <li>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이상 보관한다.</li> <li>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연 2시간 이상)</li> </ul> |
|---|

-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이용자 보호 계획서”의 내용을 따른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김기환	최근수
부 서	대표이사	고객만족센터
직 책	대표이사	팀장
지정일	2015. 01. 05.	2015. 01. 05.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수료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1-01-04	불법촬영물 및 저작권 처리방침	김기환,최근수	2시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1-08-03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최근수	2시간	방통위
법정교육	2021-09-15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김기환	2시간	방통위